

이화젠더법학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0. 7. 30.

개정 2016. 1. 26.

개정 2021. 4. 22.

전부개정 2025. 3. 31.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이화젠더법학』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의 투고자가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논문 등의 내용에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나. 논문 등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경우

다. 과거에 공간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라. 논문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마.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드는 위조행위를 하는 경우

바. 연구 과정, 연구 재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변조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위조”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등) ①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화젠더법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소는 『이화젠더법학』 원고모집 공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③ 원고투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화젠더법학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① 저자는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해 미리 밝혀야 한다.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논문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이해상충이라도 편집인에게 밝혀야만 한다. 만약 심사할 논문과 이해 상충이 있다면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특수관계인) ①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6조(출판 업적의 명기)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7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8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심의절차) ① 연구소의 장은 『이화젠더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그 사실을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저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연구소의 장은 윤리규정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와 논문에 대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③ 연구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항에 따른 결과 및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소의 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의 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 ⑤ 연구소의 장은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편집간사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이화젠더법학』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위원은 회의내용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제보자 및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 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제보한 사람 및 조사 대상자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15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윤리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학술지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 등의 삭제
2. 학술지에 3년 이상 논문 등의 게재금지
3. 연구소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6개월간 공고
4. 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해 공지
5. 한국연구재단 및 연구업적 관리기관 등에 위반내용을 통보

제16조(부칙) 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화젠더법학』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이화젠더법학』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붙임3]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예시)

연구자가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 또는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양식 예시입니다.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는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 논문을 의미함.

★ 이 양식은 한국연구재단이 배포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추가-’를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 연구과제 개요 (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의 유형 (해당하는 란에 √ 표시)

가족 (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학술대회 (Conference)		학술지 (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 학술대회명 : - 발표논문명 :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참여저자 :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학술대회명 : - 발표논문명 : - 개최지 및 개최기간 : - 참여저자 :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연구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 관계인				

※ 주의사항: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연구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서명
저자 A	()%	()%	()%	()%	()%	
저자 B	()%	()%	()%	()%	()%	
특수관계인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 (예시)

항목	내용(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함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서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확인 서명			